

의안번호	2200490
의 퇴 인	강대식의원
회 답 일	2024.08.02.
추계번호	24D0000

6·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6·25소년소녀병 등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~2030 기간 동안 721억 3,000만원(연평균 144억 2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계	연평균
보상심의위원회 운영	270	270	270	135	135	1,080	216
보상금	23,690	22,680	22,680	1,000	1,000	71,050	14,210
합계	23,960	22,950	22,950	1,135	1,135	72,130	14,42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(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)	소년소녀병 및 이중징집자와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년소녀병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2	안 제4조(보상금)	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 대해 부당한 징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	의무규정
3	안 제5조 (추가보상금)	이중징집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외에 이중징집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·육체적 고통과 피해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조(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)	○	-
2	안 제4조(보상금)	○	-
3	안 제5조 (추가보상금)	×	국방부는 소년소녀병은 군번을 받고 참전한 정규군이며, 이중징집자는 없어 추가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없다고 설명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보상금의 신청률 및 인용률, 1인당 보상금, 보상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비 등은 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- 6·25소년소녀병 중 98.4%가 남성¹⁾임을 고려하여, 생존자수 추정은 남성 생존률을 사용함
- 제정안에 따르면, 공포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보상금 지급신청은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, 심의기간은 최장 9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, 이후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부분은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

1) 국방부에 따르면 6·25소년소녀병 29,622명 중 여성은 467명(1.6%)임

[표 2] 소년소녀병 보상금 지급신청 및 심의기간

지급신청 기한	심의기간					소송제기
	심의	송달	재심의신청	재심의	송달	
법 시행후 2년 이내	3개월	1개월	1개월	3개월	1개월	2개월

자료: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다만, 지급결정에 따른 소송, 보상금의 소멸시효가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~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(안 제3조)

- 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를 참고하여 추정
- 제정안의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보상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9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업무지원을 위해 3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2029~2030년에는 보상금 지급 후 소송, 보상금 지급지원 등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2026~2029년 대비 50%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3]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계
인건비	120	120	120	60	60	480
사업비	80	80	80	40	40	320
위원회 수당 등	30	30	30	15	15	120
기본경비	40	40	40	20	20	160
합계	270	270	270	135	135	1,080

주: 인건비에는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음

자료: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나. 보상금(안 제4조)

- 6·25 전쟁 당시 만 14세~17세의 소년소녀병 참전자수는 29,622명이며, 2,573명이 전사하고 27,049명이 생존하였음

[표 4] 6.25전쟁 당시 만 14세~17세 소년소녀병 참전자수 현황

(단위: 명)

구 분	계	전사자	전후생존자
인원	29,622	2,573	27,049

자료: 국방부

- 6·25전쟁 당시(1950년) 14세(1936년 생)부터 17세(1933년 생)인 남자의 2023년 기준 생존률은 남자의 경우 평균 9.7%임

[표 5] 1933~1936년생의 2023년 생존률

(단위: 명, %)

구분	항목	1933	1934	1935	1936	계
출생자	합계	603,407	629,476	640,568	630,490	2,503,941
	남	322,079	333,899	340,187	335,034	1,331,199
	여	281,328	295,577	300,381	295,456	1,172,742
2023년 생존자	합계	75,771	99,232	123,201	141,035	439,239
	남	20,114	28,126	36,875	44,588	129,703
	여	55,657	71,106	86,326	96,447	309,536
생존률	합계	12.6	15.8	19.2	22.4	17.5
	남	6.2	8.4	10.8	13.3	9.7
	여	19.8	24.1	28.7	32.6	26.4

자료: 국가통계포털

- 전후 생존자 2만 7,049명 중 2023년 기준 추정생존자 수는 남자 평균 생존률 9.7%를 고려하면 2,635명임
- 국방부에 따르면 6·25소년소녀병 29,622명 중 98.4%가 남성이며, 여성은 467명(1.6%)임
- 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공로금 신청 대상자 1만 3,890명(본인 3,256명, 유족 10,634명) 중 본인의 공로금 신청률은 61.0%, 유족의 공로금 신청률은 26.6%임
- 신청자 중 심의완료자 3,956명 중 인용되어 공로금 지급이 확정된 사람은

3,466명으로 인용률은 87.6%임

[표 6] 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

(단위: 명, %)

	신청현황			심의완료				
	대상자수	신청자수	신청률	소계	인용	기각	기타	인용률
합계	13,890	4,820	34.7	3,956	3,466	470	21	87.6
본인	3,256	1,987	61.0	-	-	-	-	-
유족	10,634	2,833	26.6	-	-	-	-	-

자료: 국방부

- 소년소녀병 중 전후 생존자 27,049명에 대해 평균 생존률을 적용하여 본인과 유족으로 구분하고, 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공로금의 신청률과 인용률을 적용하여 소년소녀병 보상금 지급대상자수를 추정하면, 7,105명으로 추정됨

[표 7] 소년소녀병 보상금 지급대상자 수 추정

(단위: 명, %)

	대상자	신청률	신청자 수	인용률	보상금 지급대상자 수
본인	2,635	61.0	1,608	87.6	1,409
유족	24,414	26.6	6,502	87.6	5,696
합계	27,049	-	8,110	87.6	7,105

주: 소숫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소년소녀병에 대한 1인당 보상금은 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공로금(개인당 1,000만원)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, 보상금 지급총액은 2026~2028년 기간 동안 710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- 2026~2028년 기간 동안 지급될 보상금이 약 1/3씩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소송 및 보상금 청구지연 등의 사유로 2029~2030년 기간 동안 매년 100명씩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8] 소년소녀병 보상금 지급총액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계
보상금 수급자 수	2,369	2,268	2,268	100	100	7,105
보상금 단가	10	10	10	10	10	10
보상금 총액	23,690	22,680	22,680	1,000	1,000	71,0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소년소녀병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6·25소년소녀병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~2030 기간 동안 721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9] 추계결과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계
보상심의위원회 운영	270	270	270	135	135	1,080
보상금	23,690	22,680	22,680	1,000	1,000	71,050
합계	23,960	22,950	22,950	1,135	1,135	72,1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6·25소년소녀병 연령대의 생존률, 「6·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률, 인용률, 보상금단가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신청률이 나 인용률, 보상금 단가의 변화에 따라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